- 2025년 1월 중 -

불법어업 지도 · 단속 사전예고 안내문

추진목표

◇ '선(先) 지도, 후(後) 단속'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, 투명·공정한 행정 구현

1 육·해상 지도·점검 계획

□ 접경수역 출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조업 관리 강화

- (EEZ) 외국 EEZ*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(서남구저인망·자망·채낚기 등)에 대한 지도·홍보를 강화하고, EEZ 침범 조업 위험 사전차단
 - * 한·일 중간수역(89,91,358해구), 남해 EEZ(100,106해구), 울산 앞바다(93·94해구)
 - EEZ 경계선 고의 침범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은 강력 지도·단속 실시
 - (**항해장비**) ^①GPS 위치오차 등을 고려하여 EEZ 경계선과 안전거리 유지, ^②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혼용사용 금지
- 한일 중간수역에서 연료절감 등을 위해 EEZ 횡단어선 증가, 횡단 시 어구격납 철저, 지도선과 통신채널 구축하여 日지도선에 피랍 방지

□ 금어기 대게·암컷대게 포획행위 집중 단속

○ 암컷·어린 대게 포획·유통 행위, 대게류 포획금지 및 대게·붉은대게류 통발어구 사용금지구역(주11해역) 위반 등에 대한 지도·단속 강화

< 중점 단속대상 >

- ◇ 암컷 및 체장미달(9cm이하) 등 불법대게 포획·유통·판매 행위
- ◇ 대게류 포획금지, 대게·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(연중, 주11)
- ◇ 그물코 금지 규격(통발 150mm, 자망 240mm 이하) 위반
- ◇ 불법 대게류 온라인(네이버 쇼핑, 인스타그램 등) 판매행위
- ◇ 배분량 미할당 대게 포획, 초과어획, 사매매 행위 등

□ 조업구역 이탈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집중 단속

- (107도선) 주요 근해업종(권현망, 서남구·동해구저인망) 경북도-울산시 경계 107도선 침범조업 여부 집중 지도·단속
 - * 107도선 기준 권현망·서남구저인망 북상조업 금지, 동해구저인망 남하조업 금지
- (128도 이동조업) 악천후 시, 대형기선저인망,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기준 동쪽 해역 조업 여부, 허위 위치보고 등 강력 단속
- (조업금지구역) 서남해구중형저인망(외·쌍끌이) 출입항 시, 경남 거제 홍도~남여도 사이 조업금지구역(붙임1 참고) 침범조업 여부 집중 단속
- (**새우조망**) 조업구역 이탈, 날개그물·막대길이* 위반, 혼획저감장치 미부착,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위반행위 감시 강화
 - * (제한사항) **날개그물 7m, 막대길이 8m 이내**, **다만**, 어업 **규제완화 시범사업** 참여 새우조망어선은 **날개그물 및 막대길이 12m 이내**
- (대구호망) 거제~진해만 인근 대구 호망어선의 허가구역 이탈 어구 부설·조업, 무허가 조업 등 차단을 위해 무인비행장치(드론) 상시운영
 - '25년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진행현황 점검하고, 방류사업 종료 후 금어기 대구 포획·유통·판매 행위 집중 지도·점검 예정

□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이행현황 현장점검

- 사업 참여어선* 대상 TAC 배정량 준수, 어업장비(CCTV·위치발신장치) 전자어획보고, 별도조건(흡입기 마력, 날개·막대길이) 준수 여부 현장점검
 - * 제1·2구잠수기 59척, 전국새우조망연합회(거제) 12척, 총 71척
 - 특히, 어획증명관리앱 미가입 및 어획·양륙보고 실적이 전혀 없는 대상자는 시범사업 제외 등 제재조치 검토 예정

□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집중점검

- (지역대상) 부산, 경남 / 유해화학물질* 보관 또는 사용자
 - * 유독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
- (점검내용) 어장관리선 무기산 적재 및 야산·컨터이너 등 보관, 면허어장(김양식장)에서 무기산 사용에 대한 현장 단속

□ 장거리 위치발신장치(D-MF/HF) 설치 및 상시작동 지도·단속

- (**상시작동**) D-MF/HF 의무설치 개도기간 종료(~'24.3.31.)에 따라 장비 미설치·미작동** 행위 중점 지도·점검, 미작동 정황 발견 즉시 단속
 - * (설치대상) 기선권현망·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
 - ** (미설치)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미작동)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장비를 고의로 미작동하거나,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모드로 동작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
- (고장신고)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,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
 - *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·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파출소(해상-어선안전조업국 또는 경비함정)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

3 어선안전조업법

□ 주요 내용
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른 출입항 신고 이행 철저, 특정해역·조업자제 해역 출어선은 어선출입항 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, 선박 보관
 -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(인원 변경·추가 등)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할 해경파출소에 신고
-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정·조업자제해역 출어선(매 12시간), 일반 해역 출어선(매 24시간) 위치통지 의무 준수
 - 특히, 기상특보(태풍·풍랑) 및 기상 예비특보 발효 시 지도선, 해경 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, 구명조끼 착용의무 착용
 - * (풍랑특보) 매 12시간 이내 / (태풍특보) 매 4시간 이내

□ 면세유류 사후관리 점검계획

- (지역대상) 경북 / 관리기관, 선박 등 공급대상 사용자
- (점검사항) 면세유류 대상 선박·시설 실제 존재·운영, 공급기관 및 관할 주유소 현장점검*, 면세유 용도 외 사용, 부정유통 등
 - * 배정신청서, 시간계측기 누계시간 등 배정서류, 착색제 사용, 부정유통 관리
 - 허가말소·행정처분 중 면세유류 공급 및 변동사항 신고 여부 점검

5 수산관계법령 주요 제·개정 및 제도 안내

□ 어선 위치통지 제도 개선

- (주요내용)「어선안전조업법」시행령 개정에 따라, 전 해역(특정· 조업자제해역 포함), 풍랑·태풍특보 시, 위치통지 제도 개선(붙임3 참고)
 - * (일반해역) 매 24시간 이내 / (특정·조업자제해역) 매 12시간 이내 / (풍랑특보) 해역 구분 없이 매 12시간 이내 / (태풍특보) 해역구분 없이 매 4시간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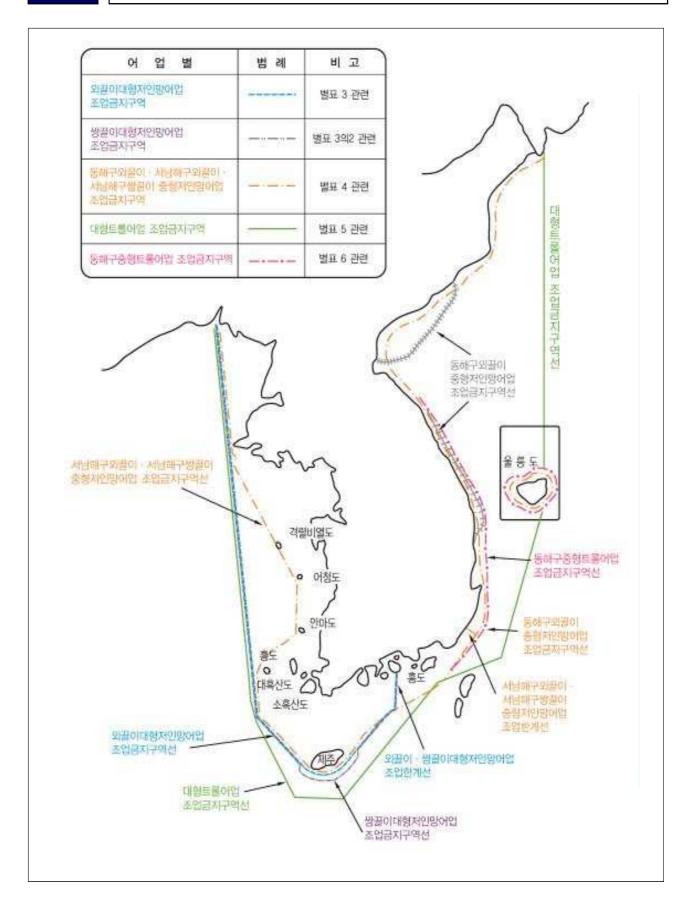
□ 어선검사증서 등 전자적 형태 발급 실시

- (주요내용) 종이 형태로 발급·관리·사용하던 어선검사증서* 등을 '24년 6월 21일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사용·관리 가능
 - * 어선검사증서, 어선특별검사증서, 임시항행검사증서, 건조검사증서, 예비검사증서, 별도건조검사증서, 검정증서, 건조(제조·정비)확인증, 제한하중 등 확인증 총 9종
 - 해양교통안전공단의 '전자정보시스템'을 통해 전자문서 내려받기 가능

□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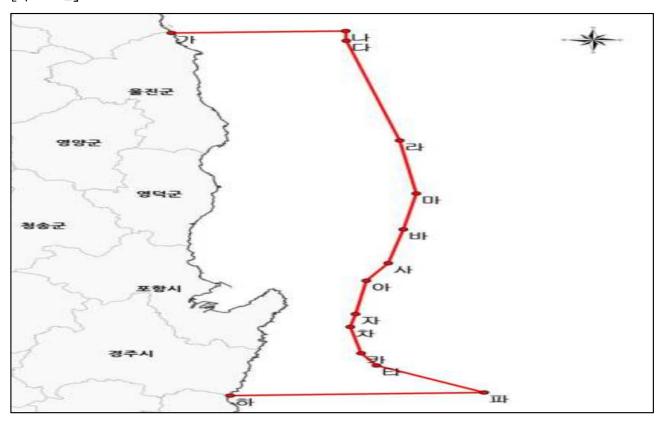
- (신고대상)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, 금어기·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위반, 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자
 - (신고방법) 1588-5119(전화), 인터넷(동해단 홈페이지, 카톡 채널, 국민신문고 등)
- (**포상금**)「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」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

붙임1 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



불임2 대게류·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구역도

[부도 2]



○ 세부 좌표(경위도)

- 가.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21분52초
- 나.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45분12초
- 다. 북위37도06분12초 동경129도45분12초
- 라. 북위36도41분27초 동경129도51분24초
- 마. 북위36도28분18초 동경129도53분08초
- 바. 북위36도19분30초 동경129도51분06초
- 사. 북위36도11분13초 동경129도48분48초
- 아. 북위36도06분57초 동경129도45분44초
- 자. 북위35도58분46초 동경129도44분01초
- 차. 북위35도55분37초 동경129도43분14초
- 카. 북위35도49분04초 동경129도44분27초
- 타. 북위35도46분01초 동경129도46분21초
- 파.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30도00분15초
- 하.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

붙임3 어선 위치통지 제도 개선[요약]

구	분		현 행	개 정	
평	일반 해역	1회	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 통지		최초 통지는 출항시각 기준 24시간 이내,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* 2회차 통지는 1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, 3회차 통지는 2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, 이후 동일한 방법 00시(출항시각)
			인정 미인정	1회	인정 12시
	특정해역	3회	매일 출항시각 기준 6시간 후 통지, 2 · 3번째는 이전통지와 6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00시(출항시각) 인정 미인정 미인정 08시 14시 인정 미인정 08시	2회	최초 통지는 특정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,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 00시(전입시각) 인정 인정
	조업 자제 해역	2회	매일 출항시각 기준 8시간 후 통지, 2번째는 이전통지와 8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	2회	최초 통지는 조업자제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,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
기상 특보 시	풍랑 특보	평시+2회 *ex) 일반해역 3회(1+2)	이행 필요 12시 11시 11시 30분(풍랑특보 발효)	전해역 2회	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 이내 (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) 23시 30분 인정 인정 인정 (몽광특보 발효)
	태풍 특보	평시+6회 *ex) 특정해역 9회(3+6)	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마다 통지 (전후 30분 이내만 인정)	전해역 6회	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 이내 (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)

붙임4 관리기관·어업인·석유판매업자별 주요 점검사항

점검 대상	점검내용	제재사항			
관리	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			
기관	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20			
	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시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,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·양도 또는 사망· 이어(離漁)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			
	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			
	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,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 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	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			
어 업 인	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(자동차, 가정용 보일러,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)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			
	※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, 그 어민등과 공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	당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			
	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 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			
	 ◆ 그 외,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◆ - 어업 등에 대한 제한(취소, 감척 등)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→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- 「수산업법」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→ 과징금(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)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				
	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·공제세액을 초과 신청	감면세액 추징			
석유 판매 업자	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·공제세액 신청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			
1	※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,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(조특법 제106조의)				